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 1473 호 2024. 9. 19.(목)

## 조 례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2호[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3호[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5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4호[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8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5호[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10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6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14
-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7호[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1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71호[2024-2025절기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2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75호[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87호[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8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따른 정정 열람공고] 2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292호[공 고]..... 28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a href="http://www.bukgu.ulsan.kr">www.bukgu.ulsan.kr</a>)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미디어정보과(☎241-7125, 행정 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전대”를 “전대(轉貸)”로 한다.

제8조 중 “절감”을 “절약”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무상사용 기간 기산일)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 기산일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0조제5항 전단 중 “심히”를 “매우”로 한다.

제31조제5항제3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를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할 수 있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32조제3항 단서 중 “감한”을 “뺀”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 중 “건축하고자 하는”을 “건축하려는”으로 한다.

제52조제2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 유예기간은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가산하여”를 “더하여”로 한다.

별표 제3호의 진료활동의 실명란 중 “장애자용”을 “장애인”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및 위임 사항과 개별법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을 반영, 현행 조문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 개정 및 위임 사항 반영

- 대부료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제34조제2항)  
(현행) 100~3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 변상금 분할납부 가능 금액 및 횟수 변경(제62조)  
(현행) 100~500만원에 따라 분할납부 기간 및 횟수 구분  
(개정)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 변상금 징수유예 기간 규정 신설 : 1년(제61조제3항)

**나. 개별법령에 규정된 감면율 반영(제31조제6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료 감면율 : 100분의 80

**다. 그 밖에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춘 정비**

- 상위법에 따른 조문 변경(제16조)  
(현행) 기부채납일 기준 → (개정)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
- 차별적 용어 정비 : 장애자용 → 장애인(별표 제3호)
- 국가보훈처장 → 국가보훈부장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주류, 마약류 및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시책과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전문가 등 자문)** 구청장은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최근 급변하는 사회환경으로 인해 마약, 도박 등 다양한 중독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소년 피해도 급증하고 있음.
-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제1조 ~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제3조)
- 다.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제4조 ~ 제5조)
- 라. 전문가 자문 및 예방 교육, 홍보(제6조 ~ 제7조)
- 마. 예산 지원(제8조)
- 바. 협력체계 구축(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4호

###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대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미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관리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 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아마추어무선 교육·훈련

3.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지원절차,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긴급 통신 지원에 뛰어난 활동을 했거나 그 밖에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게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제정이유

- 재난재해 상황에서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으로써의 아마추어무선망의 운용, 교육·훈련, 긴급통신사업 활동 등 재난재해 대응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 나. 구청장의 책무(제2조)
- 다. 재난재해 대비 교육·훈련 등 활동 지원(제3조)
- 라. 지원신청(제4조)
- 마. 포상(제5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5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 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도시재생사업이 시행 중인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계획을 말한다.
3.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효과를 지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준공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표와 시행 성과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에 관한 분석 및 향후 운영·관리 계획
3.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 사업성과 확산 계획
4.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평가체계 등 구체적인 점검계획
5.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및 재원확보 방안
6.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사후관리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지원)**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사업
3.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민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운영·관리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점검)** ① 구청장은 위원회와 센터를 통해 매년 도시재생사업 시행지역별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사후관리에 대한 점검 시에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점검 결과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사업 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에도 도시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확산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지원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제1조 ~ 제4조)
- 나. 사후관리계획 수립(제5조)
- 다. 사후관리 지원(제6조)
- 라. 사후관리 점검(제7조)
- 마. 지도·감독(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6호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2만원”을 “5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국민권익위원회 과태료 상향 권고)에 따라 구에서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하여 시·구·군별 상이한 과태료를 일치시켜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금연구역 흡연행위 과태료 금액 상향 조정(제9조제1항)
  - (현행) 2만원 → (개정) 5만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박천동** (인)

2024년 9월 19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367호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함양과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2.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서 문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구민의 독서활동 육성 및 권장에 관한 사항
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
3. 작은도서관(공동주택 내의 작은도서관 포함) 및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독서 문화 진흥행사 개최 지원
4. 연령별 ·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5.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

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

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도서, 상품권, 기념품을 배부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행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복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상·재정상의 지원)**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을 위해 독서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상·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1. 개정이유

-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시행 '24. 5. 1.)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여 구립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제2조 ~ 제3조)
- 나.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운영(제6조)
- 다.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포상(제7조)
- 라. 책 읽는 울산광역시 복구 추진위원회 조항 삭제
- 마. 그 밖에 용어의 띄어쓰기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정비
  - (현행) 독서문화 진흥 → (개정) 독서 문화 진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271호

# 2024-2025절기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공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의거, 2024-2025절기 어린이, 임신부 및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계획 및 의료기관 현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0일

##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장

### ○ 사업대상 및 접종기간

구 분		접종기간	지원대상
어린이	- 2회 접종 대상자	‘24.9.20.(금) ~ ‘25.4.30.(수)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2011.1.1.~2024.8.31.출생자)
	- 1회 접종 대상자	‘24.10.2.(수) ~ ‘25.4.30.(수)	
임신부	-	‘24.10.2.(수) ~ ‘25.4.30.(수)	임신부 (임신여부 증빙서류 제시 필수)
어르신	- 75세 이상 어르신	‘24.10.11.(금) ~ ‘25.4.30.(수)	1949.12.31. 이전 출생자
	- 70~74세 어르신	‘24.10.15.(화) ~ ‘25.4.30.(수)	1950.1.1.~1954.12.31. 출생자
	- 65~69세 어르신	‘24.10.18.(금) ~ ‘25.4.30.(수)	1955.1.1.~1959.12.31. 출생자
지자체	- 14~64세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24.10.14.(월) ~ ‘25.2.28.(금)	1960.1.1.~2010.12.31. 출생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수급자

- \* 2회 접종 대상자: 2024.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 및 처음 받는 생후 6개월~8세 소아의 경우 (4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접종)
- \* 1회 접종 대상자: 2024.6.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횟수가 총 2회 이상(누적) 있는 경우 또는 9세 이상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동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수급자
호계동 (9개소)	365호계내과의원	295-1190	●			●
	김환근내과의원	295-6996	●		●	
	울산엘리아병원	290-2100	●	●		●
	세나요양병원	290-2000	●			
	이순일내과의원	282-7588	●	●		
	청십자흥부외과의원	295-5919	●			
	한양마취통증의학과의원	293-5588	●			
	의료법인 월촌의료재단 해솔요양병원	260-5577	●			
	에스정형외과	286-5800	●			
화봉동 (5개소)	굿닥터연합의원	261-7553	●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87	●	●	●	
	김유홍내과의원	288-9693	●	●	●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75	●	●		●
	홍찬의소아과의원	281-0756	●	●	●	
천곡동 (6개소)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04	●	●	●	●
	민사랑내과의원	292-1111	●	●	●	
	새현대의원	291-3770	●	●	●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00	●	●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77	●	●	●	
	정안요양병원	295-2888	●			
매곡동 (7개소)	다정의원	282-0127	●	●	●	
	드림아이의원	295-0129	●	●	●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11	●	●	●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31	●	●	●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의원	977-1000	●	●	●	
	아이마음아동병원	761-5170	●	●	●	●
	웰당이진우내과의원	292-7179	●	●		
신천동 (6개소)	복음요양병원	268-7000	●	●	●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75	●	●		
	울산아동 병원	282-7171	●	●	●	●
	의료법인 기쁨의료재단 엠디한방병원	286-3355	●	●		
	한빛이비인후과의원	286-7613	●	●		
	호계연합내과방사선과의원	286-7585	●			
양정동 (5개소)	BB요양병원	716-1020	●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00	●	●	●	
	이기호내과의원	287-6187	●			
	하나정형외과의원	287-9852	●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75	●	●	●	●
연암동 (3개소)	김현경의원	287-0314	●	●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시티병원	280-9000	●	●	●	
	현대연합의원	291-9800	●	●		
송정동	몸바른의원	222-7575	●	●	●	

동별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장애인 수급자
(5개소)	주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36	●	●	●	
	탑 이비인후과의원	249-7582	●	●	●	●
	송정퍼스트이비인후과의원	297-8200	●	●	●	
	송정연세의원	289-1111	●			
명촌동 (3개소)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10	●	●	●	
	이내과의원	289-1066	●	●		●
	행복한내과의원	283-2299	●	●		
상안동 (4개소)	의료법인 엘림의료재단 농소요양병원	282-7002	●			
	조윤성내과의원	293-7171	●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294-8275	●	●	●	
	북울산병원	293-8888	●	●	●	
중산동 (2개소)	김영근의원	282-3770	●	●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75	●	●	●	
염포동 (2개소)	구암의원	287-7246	●	●		●
	함께하는의원	289-7046	●	●	●	
산하동 (2개소)	한결의원	268-8227	●	●	●	●
	강동오션키즈의원	258-1004	●	●	●	
	낭만닥터마취통증의학과의원	978-5678	●			
정자동	강동의원	298-7534	●			●

※ 연령별 접종일정을 지키지 않을 시 무료접종이 안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79, 8246~7)

※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동시접종 가능합니다.

## ○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병의원명	전화번호	주 소	
1	365호계내과의원	295-11 90	호계로 272	호계동
2	울산엘리아병원	290-21 00	호계로 285	
3	이순일내과의원	282-75 88	호계2길 7, 3층	
4	해솔요양병원	260-55 77	당수골5길 41-6	
5	세나요양병원	290-20 00	호계로 296	
6	청십자흥부외과의원	295-59 19	호계로 202	
7	굿모닝이비인후과의원	287-42 87	화봉로 67, 4층	화봉동
8	김유홍내과의원	288-96 93	화봉로 67, 2층	
9	우리가정의학과의원	289-20 75	화봉로 75	
10	개구쟁이소아청소년과의원	294-75 04	달천로 9, 202호	천곡동
11	민사랑내과의원	292-11 11	아진로 102, (그린상가) 201호	
12	새현대의원	291-37 70	천곡길 169, 106동 201호	
13	연희가정의학과의원	295-08 00	천곡남로 33, (삼성코아루상가) 203~204호	
14	영남이비인후과의원	286-82 77	가재길 87, 3층	
15	정안요양병원	295-28 88	관문길 251	매곡동
16	다정의원	282-01 27	매곡1로 15	
17	드림아이의원	295-01 29	호계매곡1로 31, (에일린의뜰차상가동) 105호	
18	봄소아청소년과의원	286-13 11	매곡1로 15, 3층	
19	상쾌한이비인후과의원	281-12 31	매곡로 115, 202호	
20	서울아산 이비인후과의원	977-10 00	매산로 15, (참조은빌딩) 3층	
21	아이마음아동병원	716-51 70	괴정1길 114, 3, 4, 5층	시천동
22	열린이비인후과의원	291-29 75	호계로 322, 2층	
23	울산아동병원	282-71 71	호계로 332-1, 3층	
24	복음요양병원	268-70 00	제내1길 6	
25	엠디한방병원	286-33 55	호계로 332-1, 현대하이플러스 2,4층	



26	윤가정의학과의원	287-23 00	염포로 529, 303호	양정동
27	이기호내과의원	287-61 87	염포로 601, 2층	
28	한소아청소년과의원	288-00 75	염포로 601, (현대자동차회관) 2층	
29	BB요양병원	716-10 20	염포로 353	
30	의료법인 송은의료재단 울산 시티병원	280-90 68	산업로 1007	전진동
31	현대연합의원	291-98 00	상방로 106, 2층	송정동
32	몸바른의원	222-75 75	박상진13로 3, 3층	
33	탐 이비인후과의원	294-75 82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503,504호	
34	쥬라기소아청소년과의원	251-33 46	박상진12로 11, 지오타워 403~405호	명준동
35	이내과의원	289-10 66	명춘로 85, (평창리비에르2차상가) 203호	
36	김은정소아과의원	288-55 10	명춘15길 10(평창리비에르3차상가) 201호	상안동
37	농소요양병원	282-70 02	아진로 78	
38	코끼리이비인후과의원	294-82 75	아진로76, (맑은샘빌딩) 201호	
39	북울산병원			중산동
40	이강우소아청소년과의원	268-65 75	중산동로25, 401호	
41	김영근의원	282-37 70	이화5길 10	염포동
42	구암의원	287-72 46	염포로 633	
43	함께하는의원	289-70 46	염포로 673	산하동
44	강동오션키즈의원	258-10 04	산하중앙2로 150, 4층	
45	한결의원	268-82 27	산하중앙2로 290, (아이스케어) 305~306호	정자동
46	강동의원	298-75 34	동해안로 1441	

※ 의료기관 방문 전 ☎전화로 백신보유 여부를 확인 후 방문하세요.

※ 보건소에서는 접종하지 않습니다.

※ 문의: 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 052-241-8779, 8246~7)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275호

#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일원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라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3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개최 목적

-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견 수렴

### 2. 일 시 : 2024. 9. 30.(월) 14시

### 3. 장 소 : 강동동 강동문화센터 4층 시청각실(북구 산하중앙3로 51)

### 4. 내 용

- 강동동 도시재생사업 추진경과
-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세부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 주택정비(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 안내
- 지역주민 의견청취

### 5. 기타 사항

-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직접 의견을 제시하실 주민께서는 공청회에 참석하시거나 공청회 개최일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방문(본관 2층), 이메일(bjms2023@korea.kr) 및 팩스(052-241-7909)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052-241-8621~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사 업 명 칭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출인	성 명 : [연락처 : ]
	주 소 :
의 견 내 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27조에 의하여 강동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4. 9. .

의견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 - 128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8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따른 정정 열람공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283호선)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시기 바라며, 의견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9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3-283호선)사업

나. 명 칭 : 이화정마을 소방도로 개설공사

###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530-5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당초) L=186.0m, B=6.0m, A=1,591.8m<sup>2</sup>

(변경) L=186.0m, B=6.0m, A=1,585.6m<sup>2</sup>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사업기간 : 2022. 3. 17. ~ 2024.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열람기간 : 공보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8.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도시과

9.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과(☎052-241-86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4 - 1292호

## 공 고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9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성명	(주)경동도시가스 대표이사 송재호		
주소	울산광역시 복구 염포로 260-10		
점용 위치	○ 송정동 1155-2	노선명	○ 중1-327
점용 목적	○ 도시가스 매설공사	점용 면적	○ L = 3m ○ A(일시) = 5.4m <sup>2</sup> ○ A(계속) = 0.33m <sup>2</sup>
점용 기간	○ 당초 : 2024. 7. 19.(착공일) ~ 2024. 9. 16.(착공일로부터 60일간), 계속점용 준공일로부터 10년 ○ 변경 : 2024. 7. 19.(착공일) ~ 2024. 10. 16.(착공일로부터 90일간), 계속점용 준공일로부터 10년		